

음악대학 취업진로지도소위원회 내규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취업진로지도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설치하는 음악대학 취업진로
지
도소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, 음악대학 학생회장,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,
임
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진로지도에 관한 사항
2. 본 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에서 부의하는 사항
3. 음악대학 학생 취업대책위원회 지도 및 취업률 제고에 관한 중요사항
4. 기타 취업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
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
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도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
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